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78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304,203,52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44,307,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1]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2020. 9. 8.자 부과처분을 "취득세 313,329,620원 및 지방교육세 45,637,13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04,203,52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44,307,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장 청구취지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5. 본점을 "[redacted]시 B, 5층 C호"로, 목적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자산관리 등"으로, 사내이사를 "D"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19. 11. 27.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서울 [redacted]구 E아파트 F동 지하 4층, 지상 2층 건물 중 G호 내지 H호 및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5,166,500,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하고,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합계 237,65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는 명목상의 본점에 해당할 뿐 원고의 실질적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는 원고와 목적 사업이 동일하고 원고의 대표자인 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의 실제 사무실인 "[redacted] [redacted]구 K, L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판단하고, 이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 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6,660,000원, 과소신고 가산세 82,664,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879,520원 및 지방교육세 41,332,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75,9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의사인 M이 병원 개설을 위하여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매수자금 대출이 어렵게 되자, 분양대행사 등은 M과의 합의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여 일단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을 개원한 다음 M이 매매대금을 정산하면 그때 회사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하기로 하고, 2019. 10. 15.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9.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매도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계열사인 J의 대표이사 D을 임의로 원고의 대표자로 해놓은 것일 뿐, 원고가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와 J의 실제 본점 주소지인 이 사건 사무실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원고의 실질적 본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중과하기 위해서는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②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③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서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의 내용에 의하면, 위 ③의 요건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로 전입을 함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병원으로 매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본점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J의 본점 주소지로 보고, 언제 어떻게 전입을 하였다는 명확한 설명도 없이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애초부터 M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M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인구팽창 억제, 균형발전, 산업집중의 부작용이 발생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에게 중과를 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형평상 심히 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며,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결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M은 이 사건 부동산에 치과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2019. 8. 3. O 유한회사(이하 'O'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2층 G호, P호, Q호, R호, S호에 관하여, T 소유의 2층 U호, H호에 관하여, N 소유의 V,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6,000만 원, 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차임 합계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9. 5. 위 소유자들과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5,333,03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합계 516,6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M이 신용상의 문제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W(이하 'W'라고만 한다) 등은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한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2019. 10. 15.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주식은 J가 45%, X이 40%, Y이 15%를 소유하고 있는데, J는 이 사건 부동산 중 V호, I호의 소유자인 N, 분양대행사인 W와 함께 "Z"의 계열사이고, Y은 N의 사내이사이며, X은 G호 내지 S호 소유자인 O의 대표자이다.

3) 원고는 2019. 10.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합계 5,166,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M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가분양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위 임대차계약서(상가임대차계약서, 갑 13호증)는 모두 "Z"이 작성·비치한 서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J의 2016. 3.경부터 2019. 3.경까지, 2020. 12.경부터의 본점 소재지, O의 2017. 8. 17.부터 2018. 11. 1.까지의 본점 소재지는 모두 이 사건 사무실이다.

회사	본점 소재지	대표자	회사성립일
W	[redacted]구 E아파트 F 동 1층 AA호, AB호, AC호	A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J	[redacted] [redacted]구 E아파트 F 동 1층 AE호	D AD	2015.1.22.
N	[redacted]시 B, 5층 AF호	Y	2016.9.30
O	[redacted]시 B, 5층 AG호	X	2017.8.17.
원고	[redacted]시 B, 5층 C호	D	2019.10.15.

5) 한편, 피고는 2019. 12. 17.과 2020. 1. 2.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redacted]시 B, 5층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위 건물의 5층에는 A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I" 사무실만이 AJ호부터 AK호까지 존재할 뿐 원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주소지 C호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명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AH 주식회사는 2019. 10. 15. 원고와 사이에 전체 200평 중 약 2평에 관하여 예치금 10만 원, 월 사용료 10만 원(3개월 선지급 조건, 이후 1개월 단위로 임차)에 '무보증사용계약(전대)'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공간대여가 아닌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 특성상 주소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비상주 서비스임이 확인되었다.

6) 이에 피고는 2020. 1. 2. J의 구 본점 주소지인 이 사건 사무실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그곳 외부에 "Z", 계열사 "J, N, W" 등의 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 내부는 회장실과 직원 사무공간, 고객응접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회장실에 D과 임원 1명이, 직원 사무공간에 직원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다.

7)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서류에 기재된 원고 및 원고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원고의 대표자인 D의 휴대폰번호로 확인되고, 원고의 2019. 10. 21.자 상가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상에 원고 전화번호는 J 직통전화번호이며, M의 2019. 9. 5.자 각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3)상의 매도인인 O, N, W의 각 전화번호도 모두 J의 직통번호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실질적 본점을 이 사건 사무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여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취지 참조),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이 모두 대도시에 있고, 실제 사무처리도 모두 대도시에서 이루어짐에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가 아닌 곳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경우 그러한 법인의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법인들이 실제의 본점 등을 등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규정상의 대도시 내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라 할 것이고, 본점은 그 당연한 전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기획, 조정, 총괄, 재무 등 법인의 주된 사무 등이 수행되고, 법인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한편,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취지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상주하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 원고의 사무나 사업을 수행한 장소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본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먼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redacted]시 B, 5층 C호"로 되어 있으나, 위 건물 5층에는 C호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관련이 있는 물적 시설 및 인적 자원이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9. 10. 15. 위 사무실을 AH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면서 '무보증사용계약(전대)'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 특성상 주소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비상주서비스로, 원고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는 원고가 사업자등록 또는 상법상의 법인설립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마련한 주소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위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주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redacted]시 B, 5층 C호"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실질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점이 어디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원고의 인적 설비·물적 설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① 원고는 대표자인 D을 제외하고 그 임직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서류의 원고 및 원고 담당자 각 전화번호란에 대표자인 D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10. 21.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원고) 전화번호란에 D이 대표이사로 일하는 J의 직통번호를 기재한 점, J와 원고의 목적사업이 동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된 의사결정은 대표자인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업무는 대표자인 D이 직접 담당하거나 D이 대표이사로 일하는 J 직원들에 의하여 일부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주식은 전소유자인 N 및 O의 각 대표이사와 이 사건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에 관여한 Z에 속한 J가 각 일정비율로 나눠 보유하고 있는데, 위 O 및 J의 종전 본점 소재지는 모두 이 사건 사무실로 되어있는바,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대표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J 뿐만 아니라 원고 주식을 보유한 회사 또는 그 대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사무실 외부에는 "Z", 그 계열회사로 "J, N" 등이 기재된 현판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회장실, 직원 사무공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곳 회장실에 D이, 직원 사무공간에 직원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는바, D과 Z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의 의사결정 및 전반적인 사업 수행

① 원고는 M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신용상의 문제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Z에 속한 분양대행회사 및 매도인 등이 주축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되었는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설립 직후 전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출을 일으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② 원고가 2019.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 체결한 상가분양계약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3), M과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은 모두 "Z"이 미리 작성, 비치한 서식이나 용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⑷ 위와 같이 원고는 설립 이후 그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을 하였고, 그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 등은 원고의 대표자인 D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D이 상주하는 Z 사업장인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의 전반적인 사무처리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본점·주사무소 등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서 중 과세예고사유에 '6) 원고와 J는 D이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법인 목적사업이 동일하고, 7) J의 예전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사무실에 D 별도의 회장실이 있고, 8)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대도시 외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 등 사업총괄 본점의 기능을 유지하였다면 대도시내 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9) 원고의 본점 주소는 대도시 외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주소지는 공부상 존재하는 주소일 뿐 인적 및 물적 요소가 구비되지 않아 원고의 본점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총괄 본점의 기능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0) 원고는 1인 D의 단독회사로 사업총괄 본점의 기능은 대표자 D이 상주하는 장소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 주소지인 대도시 외 주소가 아닌 J의 본점 주소지로 보아 당초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대도시 외 법인으로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대도시 내 법인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차인 세액을 고지한다'(갑 제2호증 제5, 6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에 "사실상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갑 제2호증의 2 제6쪽 제9, 10행)라고 기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괄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문에서 정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부동산의 용도를 불문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달리 이 사건 처분 사유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문에서 정한 본점·주사무소 등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입법목적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이미 대도시 내에 있는 이 사건 사무실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의 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과세요건이 갖춰진 이상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거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인구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위 조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세율이라고 볼 수 없으며(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법익의 균형성).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본점 또는 사무실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법인의 유형자산으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M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변론 종결 이후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 10. 6.자 참고서면)

가)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본점 전입"으로 하였음에도 2021. 6. 7.자 준비서면을 통해 "본점 설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여기에서 '처분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과세 단위'로 구분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대도시 내 법인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밝힌 점, ②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과세요건만 갖추면 그것이 대도시에서의 본점 설립인지, 본점 전입인지를 불문하고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점 설립 또는 본점 전입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지거나 과세대상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대도시 내 본점의 설립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취득세 세목 아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그 처분이유나 사실관계 적시에 있어 각 호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0. 5. 1. 원고에게, 원고 본점은 대표자 D이 상주하는 장소로 봄이 타당하여 J의 실제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사무실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대도시 내 법인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그에 대한 2020. 8. 11. 과세전적부심사 에서 원고의 주요 의사결정은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상주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사실상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으로 2020. 9. 8.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절차적 하자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대도시 내에 있는 이 사건 사무실을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 또는 전입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끝.